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몽골과 한국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채봉 바트통갈락

2009년 8월

몽골과 한국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수

체봉 바트통갈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체봉 바트통갈락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Mongolian
Accounting Standard and Korea Accounting
Standard

Tseveen Battungalag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Hee-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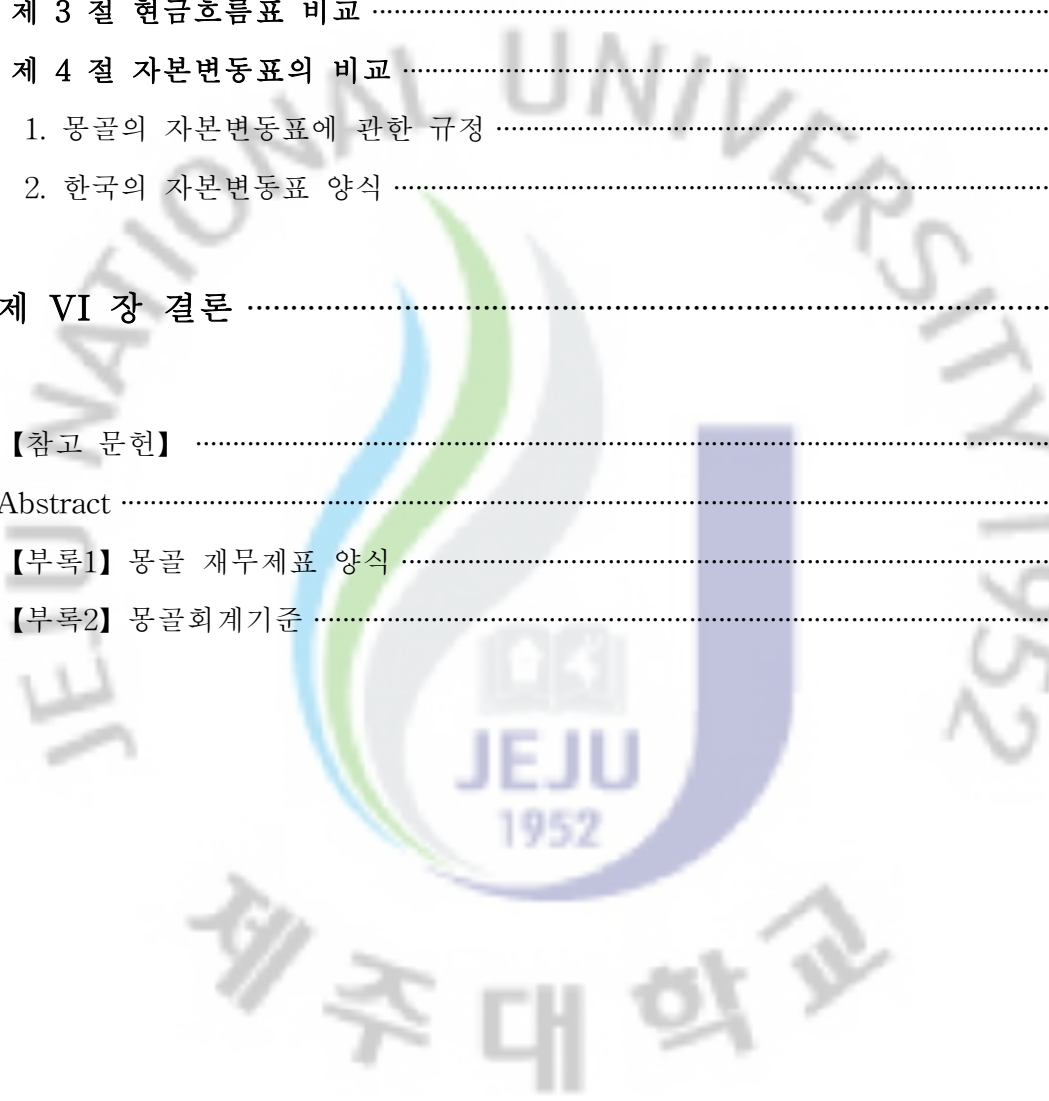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개	요	1														
제 I 장	서	론	2													
제 1 절	문	제	제	2												
제 2 절	연	구	목	3												
제 3 절	연	구	방	4												
제 II 장	몽	골	회	계	기	준	에	대	한	소	개	5				
제 1 절	몽	골	경	제	에	대	한	이	해	5						
1.	몽	골	의	경	제	5										
2.	몽	골	의	기	업	현	황	6								
제 2 절	몽	골	회	계	기	준	에	대	한	이	해	8				
1.	몽	골	회	계	기	준	의	역	사	8						
2.	국	제	회	계	기	준	도	입	10							
2.1.	몽	골	의	국	제	회	계	기	준	도	입	의	필	요	성	10
2.2.	몽	골	의	국	제	회	계	기	준	도	입	10				
2.2.1.	국	제	회	계	기	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도	입	10						
2.2.2.	국	제	금	융	기	관	에	서	의	원	조	11				
3.	몽	골	회	계	기	준	의	현	황	11						
4.	몽	골	회	계	감	독	기	관	및	제	정	기	관	14		
4.1.	몽	골	회	계	기	준	의	제	정	기	관	14				
4.3.	몽	골	공	인	회	계	사	협	회	15						
제 III 장	한	국	회	계	기	준	에	대	한	소	개	16				
제 1 절	한	국	회	계	기	준	의	역	사	16						

제 2 절 한국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감독기관	17
1. 제정기관	17
2. 자본시장 감독기관	18
3. 한국회계학회	18
4. 한국공인회계사회	19
제 IV 장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20
제 1 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20
1.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20
2. 국제회계기준의 발달과정	21
3.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22
제 2 절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23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24
2. 수탁위원회(The Board of Trust)	25
3.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25
4. 기준자문위원회(Standard Advisory Council)	26
제 V 장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비교	27
제 1 절 대차대조표 비교	27
1.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자산	30
1.1 유동자산	31
1.2 채고 자산	32
1.3 비유동자산	32
1.3.1 유형자산	33
1.3.2 유형자산의 평가와 물가상승률	36
1.3.3 무형자산	37
2.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부채	39
2.1 단기 부채(유동부채)	39

2.2 장기 부채(비유동부채)	41
3.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자본	42
제 2 절 손익계산서 비교	45
1. 수익	50
2. 비용	51
제 3 절 현금흐름표 비교	52
제 4 절 자본변동표의 비교	58
1. 몽골의 자본변동표에 관한 규정	58
2. 한국의 자본변동표 양식	60
제 VI 장 결론	63
【참고 문헌】	66
Abstract	68
【부록1】 몽골 재무제표 양식	70
【부록2】 몽골회계기준	75



【표 목 차】

<표 2-1> 몽골의 기업 현황	6
<표 2-2> 연도별 몽골 가축수	7
<표 2-3> 기업의 형태별 구분	7
<표 5-1> 대차대조표의 비교	27
<표 5-2> 자산분류 비교표	30
<표 5-3>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비교	34
<표 5-4> 부채의 분류 비교	39
<표 5-5> 자본 비교	42
<표 5-6> 손익계산서 양식 비교	46
<표 5-7>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비교	47
<표 5-8> 현금흐름표 양식 비교	52
<표 5-9> 현금흐름표 계정과목 비교	57
<표 5-10> 몽골의 자본변동표	58
<표 5-11> 한국의 자본변동표	60

【그림 목 차】

<그림 5-1> 몽골의 물가상승률 추이	36
-----------------------------	----

몽골과 한국 기업회계기준 비교 연구

개 요

세계화 경제의 추세 하에서 몽골과 한국의 경제교류도 급속화해지고 있고 더 나아갈 것이다.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한국 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거래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몽골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회계 처리내용의 오해를 제거시키고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에 접근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몽골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발전과정을 각각 살펴봤다. 둘째로, 국제기업회계기준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관찰했다. 셋째로, 몽골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체제상의 차이, 재무제표분류상의 차이, 그리고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및 주요 회계용어상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제 I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은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에 있다가 1990년 민주화 개혁 과정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구소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물자공급 및 원조의 급격한 감소와 다른 나라들과의 급격한 무역위축 등 몽골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져 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이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값싼 다수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변화에 자극을 받은 몽골정부는 1990년대 이후부터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시 경제적 안정화(물가안정)를 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하여 국내거래와 국제무역의 자율화 확대, 국내 요소시장의 자유화, 공공자산의 민영화, 및 저축과 투자 유인책 등을 도입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견실한 성장과 함께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제반 비능률 요인(정부간섭, 금융구조조정 등)을 제거하고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 나라들의 경제가 서로 협력하여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의 변화들은 모든 기업이나 각 나라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 및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교환이나 경제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학을 “기업의 언어”라고 하기도 한다. 회계는 기업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계화 문제는 회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제적으로 회계 정보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제 교류를 할 때 국제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했다.

1990년대에 몽골 경제재건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인 원조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등의 자금 및 여러 가지 구조개선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재정관리 측면에서 몽골의 공공부분의 개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회계와 감사기능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세계은행은 1990대 중반부터 국가와 민간부문의 재정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ing)제도의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도입하고, 공공부분에는 국제공공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과 한국 양국의 회계환경을 살펴보고 양국의 회계 현황을 연구하여 차이점 및 전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했다.

- 1)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본다.
- 2) 국제회계기준의 현황 및 양국의 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3) 몽골의 회계기준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다.
- 4)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회계기준의 장점을 몽골에 도입할 방법을 연구했다.
- 5) 본 연구를 함으로써 몽골과 한국 기업들간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으로 통일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몽골도 국제 상황에 맞추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몽골회계기준을 제정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회계학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초의 몽골 학생이며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을 비교한 논문도 최초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을 분석하고 차이점에 대한 조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과 몽골회계기준 및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구성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장 -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서술하였다.
- II장 - 몽골회계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몽골회계기준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을 살펴보았다.
- III장 - 한국회계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 IV장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발달과정, 필요성 및 제정기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V장 - 몽골과 한국회계기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 VI장 -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I 장 몽골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제 1 절 몽골 경제에 대한 이해

1. 몽골의 경제

몽골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나라 중의 하나이다.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흥미로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몽골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몽골의 영토는 1,564제곱킬로미터로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나라이다.

몽골 경제는 1930년부터 1960년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59년에 몽골 정부는 모든 가축을 국유화하였다. 몽골은 이때부터 사회주의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0년 몽골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전환점들 중의 하나는, 계획(명령)경제의 낡은 시스템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민주와 자유에로의 전환이었다. 1992년 초에 시장경제 체제를 담은 몽골헌법이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몽골은 시장경제 주도, 세계 다른 커뮤니티와의 관계, 기본적인 경제개혁과 구조개혁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 개혁 중에는 가격 자유화, 주식 시장의 설립, 외국투자 촉진법의 제정, 새로운 은행 제도의 확립, US 달러 그리고 기타 주요 통화와의 환율 연동제의 도입 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는 사유화 과정이었다. 1991년 이후 정부는 바우처 기준 사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200여개의 기업이 사유화 되었다. 28 백만 가축 모두가 개인소유로 전환되었다. 국회는 시장경제를 위한 은행법, 은행도산법, 외국인투자법 세법 등 많은 법률적 기초들을 마련하였다.

몽골은 개발되지 않은 광물 자원 즉 금, 은, 우라늄, 갈탄, 주석, 탕스텐, 납 등이 풍부한 나라이다. 몽골은 4천3백만 두의 가축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양, 염소, 가축, 말 그리고 낙타 등 5종류의 동물들이다. 케시미어 양털은 몽골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다.

2. 몽골의 기업현황

<표 2-1>은 현재 몽골의 법인 등기소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현황을 연도별/산업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 몽골의 기업 현황

(단위 : 개)

분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농업, 수렵, 임업, 어업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fishery)	2,208 (1,300)	2,389 (1,402)	2,640 (1,577)	2,638 (1,584)
광업, 채석 (Mining and quarrying)	373 (177)	529 (305)	628 (312)	695 (347)
제조업 (Manufacturing)	3,087 (1,470)	3,648 (2,098)	4,029 (2,167)	4,141 (2,243)
전기, 가스, 수도 공급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236 (177)	271 (231)	271 (213)	276 (214)
건설 (Construction)	1,154 (574)	1,738 (1,059)	2,108 (1,233)	2,372 (1,313)
도매, 소매업, 자동차 정비, 가정제품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household goods)	17,122 (8,247)	20,529 (10,924)	23,933 (11,429)	27,113 (15,031)
호텔, 식당 (Hotel and restaurants)	1,427 (908)	1,925 (1,367)	2,063 (1,366)	2,040 (1,376)
운송, 창고, 통신 (Transport, storage, communication)	996 (541)	1,545 (937)	1,801 (896)	2,003 (1,025)
금융서비스업(Financial Service)	1,217 (755)	1,393 (891)	1,427 (957)	1,129 (774)
부동산, 임대, 기타 영업활동 (Real estate, renting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2,403 (1,494)	3,244 (2,241)	3,973 (2,596)	4,253 (2,728)
행정 및 안보, 국방 및 사회보장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1,357 (1,306)	1,345 (1,312)	1,560 (1,477)	1,572 (1,514)
교육 (Education)	1,972 (1,740)	2,111 (1,877)	2,346 (2,005)	2,341 (2,005)
의료 및 사회 복지 (Health and social work)	1,994 (1,662)	2,269 (2,022)	2,516 (2,330)	2,548 (2,216)
기타 공공 및 개인 서비스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4,129 (2,194)	5,940 (4,148)	6,598 (3,644)	7,408 (4,126)
기타 (Other)	2 (2)	3 (3)	8 (3)	6 (2)
총계 (Total)	39,667 (22,547)	48,879 (30,814)	55,901 (32,105)	60,535 (36,498)

출처: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5-2008

* 괄호 밖의 숫자는 등록기업 수, 괄호 안의 숫자는 계속사업 영위기업 수

<표 2-1>에서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기업의 수는 60,535개사 이며, 이 중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5,498개사로 그 비율은 60.3%이다. 최근 4년 동안 평균적으로 건설업이 35.8%,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이 13.0%, 광업 및 채석 28.6%, 운송, 창고, 통신 27.7%, 부동산, 임차, 기타 비즈니스 활동 23.6%, 도매, 소매업, 가정제품 수리, 정비 22.9% 로 각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축산업 부문은 몽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90년부터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시작하고 1995년까지 가축의 98%가 사유화 되었다. 사유화 후 몽골 가축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초에 2000만 마리에 불과하던 가축수가 1997년에 3000만 마리를 넘었다. 그리고, <표 2-3>은 기업의 형태별 구분을 보여준다.

<표 2-2> 연도별 몽골 가축수

(단위 : 백만 마리)

연도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23.7	25.8	25.5	25.7	25.2	26.8	28.6	29.3	31.3	32.9	33.5									
개인 소유	4.2	8.2	14.0	18.1	22.6	24.5	26.4	27.4	29.5	31.4	32.3	30.2	26.7	23.8	25.4	28.0	30.4	34.8	40.2	43.2

출처: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1990-2008

주) 2000년 이후에는 개인소유로 전환됨

<표 2-3> 기업의 형태별 구분

(단위 : 개)

형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회사 (Company)	25,064	32,327	38,011	43,130
국가 기업 (State enterprise)	506	529	562	651
협동조합 (Co-operative)	3,033	3,226	3,223	2,595
조합 (Partnership)	3,652	3,759	3,801	3,174
예산 기구 (Budget organization)	3,931	3,902	4,141	4,044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3,491	5,118	6,050	6,858
기타 (사립 유치원, 학교 등) (Other (private kindergarten and schools etc))	-	18	63	83
총계 (Total)	39,677	48,879	55,901	60,535

출처: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9

제 2 절 몽골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1. 몽골 회계기준의 역사

1911년도에 몽골의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버그드(Bogd khaan) 왕이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올랐다. 그 당시 행정 관청들의 세금 또는 물류흐름을 기록했었다. 이것은 몽골회계 역사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14-1915년부터 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그의 지출을 기본 시스템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몽골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세입 세출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몽골은 아시아에서 미개발국 중의 하나였다. 유목민의 목축산업이 경제의 기반이었다. 이 시대에 몽골은 정부예산을 위한 단식부기 이외의 어떠한 회계시스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몽골의 민중혁명은 1921년에 성공하였으며, 이때부터 몽골은 사상, 문화, 사회시스템을 소비에트연방(이하 구소련이라 칭함) 즉 구소련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아왔다. 국가의 목표는 문화, 사상, 기술, 법률, 경제 그 외의 사회적 시스템을 구소련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이었다.

기업회계 분야도 그 상황은 비슷하였다. 몽골은 구소련의 장부기장법과 회계실무를 도입해 사용했었다. 1921년 3월에 ‘히야트’ (Khiagt city)시에 재무부를 설립하므로 정부에서 재무에 관련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1924년까지 정부의 중요한 3대 부처 중 하나인 재무부는 단지 단식부기시스템만을 유지하였다. 1924년 11월 재무장관인 Mr. B.Dorj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좋은 회계기록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오늘날 정부는 신개혁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구소련으로부터 이태리식 복식부기를 몽골에 교육하기 위해 회계전문가가 몽골에 초청되었다. 그래서 1925년부터 몽골회계기준을 개선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¹⁾ 구소련은 18세기부터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몽골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26년에 몽골정부 재무부에서 “어떻게 복식부기를 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발간하였다. 이것이 몽골 회계시스템 개발 역사의

1) 체렌나드미드, 2004. 몽골 회계학에 대한 연구 및 전망. 석사학위논문. 몽골국립대학교. p.18.

최초 공문서이다. 1926년 이후 “어떻게 복식부기를 하는지”는 상거래에서 기초적인 문서가 되었다. 이 문서로 인해 회계 실무가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1930년에 몽골정부 재무부는 이태리식 복식부기에 기초하여 “공기업의 회계”자료를 발간하였다. 1930년부터 몽골에서 국가 정책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공공재산을 기반으로 한 상업 개발이었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회계 담당자 교육이었다. 1929년에 회계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회계전문가를 교육하는 최초의 기구였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계기준도 러시아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회계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제도는 시장경제 제도로 바뀌었으며, 이후로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²⁾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초 재무제표, 공통적인 여러 양식, 장부 작성을 회계사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계사들이 인정하고 이행했었다. 그 당시 회계사들은 금전출납부 기록, 장부, 자산이나 계획 이행 감사 등 의무가 있었다.

몽골의 재무제표,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 정부의 재무부는 세계은행에서 무상 지원을 받아 몽골의 회계 시스템을 시장경제 조건에 맞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약을 국제 회계감사 회사인 ARTHUR ANDERSEN.co.ltd와 1993년도에 처음으로 체결했었다. 재무부 장관 지시로 1995년도에 "재무제표 작성 방법", "장부 목록 기록 안내"가 통과되어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오늘날 몽골의 회계는 회계 경영 정보 기계화, 회계 감사,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발전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6년부터 은행들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었다.³⁾

1990년대 초 일부 국영기업에 대해 법인세제도(1993)가 도입되었다. 1995년에는 “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영기업 자산 감가상각 시행조례 (1995)”, “회계 감사규정” 등이 제정되고 “회계감사조례”가 개정(1996) 되었으며 그 후 “회계감사법 (1997)이 제정되었다.

2) 몽골 재무부. 2006. 회계 및 재무제표 관련 규정. 언거트. 울란바타르. p.3.

3) 푸렙토야. 2006.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그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몽골국립대학교. p.29.

2. 국제회계기준 도입

2.1. 몽골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는 투명한 회계정보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국제 활동이 진척됨에 따라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다른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회계정보가 다른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내회계기준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증대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2.2. 몽골의 국제회계기준 도입⁴⁾

2.2.1. 국제회계기준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도입

몽골은 1927년에 러시아 회계모형을 따라 단식부기법을 복식부기법으로 변경하여 90여 년간 사용하여 왔다. 1993년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인회계사법, 감사법인, 회계상담전문가에 관련하여 회계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회계법률 제정 및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초기에는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계획에 따르는 모든 지침 및 규칙 등이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모두 철회되고 새로이 작성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지식의 부족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법률적 지침 규정들의 개발되지 못했으며,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만 존재하고, 회계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많은 시행착오가 이루어졌다.

4) Dondog.L. 200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mplementation in Mongolia*. Journal of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pp.1-36.

2.2.2. 국제 금융기관에서의 원조

1993년에서 1994년까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원조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국가 공기업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회계전문가 집단과 교수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 개발 할 수 있었으며, IAS에 기초하여 교과서와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CPA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3. 몽골회계기준의 현황

21세기는 IT 시대이며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개방화 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 나라들이 동일한 기준을 희망하고 있고 국가 간의 교류가 보다 더 활성화해질 필요가 있다. 몽골 회계기준을 세계적인 국제기준에 맞춘 합리적이고 개선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몽골의 상황에 맞는 기준과 정책을 제정하여 국제 관련 전문 기구들과 교류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사용하고 있다.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도입, 사용하는 방법

②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자국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공용어가 영어인 많은 나라들이 도입,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나라들은 공용어가 영어지만 자국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자국 특성에 맞추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장점들이 있다.

몽골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원본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몽골의 정부측에서는 재무부 회계과, 재무부 산하 회계전문위원회가 몽골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연구소, 유엔개발프로그램, 아시아개발은행, 감사위원회,

MONAGA(Mongolian Accounting Government Association) (몽골정부회계사협회) 등 단체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5년에 “회계법”이 통과됐으며 본 법령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목적으로 “몽골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거나 재무제표 및 작성방법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춘다.”라는 사항이 언급되었다.

2002년도에 회계법을 개정하여 본 법의 제4조에 "사업체 및 회사의 회계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야한다", 제5조에 "회사 및 사업체는 회계기록을 발생기준으로 기재한다", 제9조에 "국유나 국가의 소속 기관, 단체가 분실한 재산 청산은 원가 및 시장 최고가로 한다"는 등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16조에 몽골 국내적으로 사용될 기준은 국가 기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법에 기재함으로써 이전 법에 비하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계법 이외에 "감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 재무제표 양식, 작성방법을 1995년 5월 17일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여 통과시켰다. 본 규정을 2002년도부터 사업체나 공영기업들이 준수하고 있다. 국영기관들은 2002년 9월 12일 재무부 장관 승인으로 통과된 "국영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3년 01월01일부터 국영기관들이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회계기준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되었었다. 계획적인 틀, 정해진 가격 그리고 관료주의적이고 경제적인 독점 상황에 의해서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등 여러 단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회계기준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사용되는 재무제표가 많지 않다. 재무제표는 간략하고 기본적으로 5개로 구성되는 장점이 있다.

회계 업무를 국내 기준에 맞추려면 다음과 같이 2가지 형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 ① 당 기관의 회계 업무 전체
- ② 재무제표만을 맞추는 것이다.

회계 업무를 국내 기준에 맞추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 작업이 필수적이다.

- ① 회계기준 인식 교육
- ② 프로그램이나 장비 개선 등이다.

몽골 기업들의 회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몽골 국내 기준에 맞추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 회계사들의 정보나 능력 부족 또는 기업의 능력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

② 회계 장부 결제 업무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경영 보고, 정부 회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는 아직도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 말고 구식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현재 몽골에서 준수하는 몽골회계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⁵⁾

제 1 장. 일반조항

제 1조. 회계법의 목적

제 2조. 회계상의 입법.

제 3조. 용어의 정의

제 4조. 회계 원칙

제 5조. 회계 기록의 기초

제 6조. 회계의 단위

제 2 장. 회계 기록의 유지

제 7조. 원시적 회계문서

제 8조. 회계기록의 유지

제 9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 3 장. 재무제표 준비를 위한 구성체제

제 10조. 재무제표의 구성

제 11조. 재물조사

제 12조. 재무제표의 제출

제 13조. 회계연도, 합병 및 보고서의 제출

제 14조. 회계 증빙과 계산서의 보관

제 4 장. 관리회계와 회계조정

제 15조. 관리회계시스템

제 16조. 회계 기준

제 17조. 기업실체 또는 조직의 관리회계 그리고 조정.

제 18조. 내부회계 감독

제 19조. 회계담당자의 권리와 책임

제 20조. 회계담당자의 활동의 금지

제 21조. 회계의 주감독관

5) 현재 준수하고 있는 몽골 회계법. 2002.

제 22조. 회계 직원을 위한 동기와 인센티브급여

제 5 장. 다른 법률 조항들

제 23조. 회계법률 제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

제 24조. 법률의 실행

4. 몽골 회계 감독기관 및 제정기관

1996년부터 몽골 회계 경영 처리 업무를 정부 및 전문기관들이 이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회계 기본 정책 수립, 심의 이외 공기관이나 공영기업의 회계 부기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할 업무를 이행한다. 재무부 관할 관청인 1996-2003년도에 “회계부”, 2003-2004년도에는 “회계 정책 및 조정국”, 2004-2006년도에는 “회계 정책 및 조정부”, 2006년부터는 “회계 감사국”이 몽골 회계 부기 및 감독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사하고 있다.⁶⁾

4.1. 몽골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몽골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위탁을 받은 몽골회계연구원(Mongolian Accounting Institute)이 몽골회계기준위원회(Mongo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MASB)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2. 몽골회계기준의 감독기관

몽골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은 SAB(State Auditing Board)이다. SAB는 금융감독 기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감독 기관의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 감독

6) 몽골 “회계감사국”은 회계 부기 규정 및 감사 관한 업무를 총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다.

- ② 금융회사 검사
- ③ 자본시장 감독
- ④ 회계감독 등이다

4.3. 몽골공인회계사협회 (Mongoli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MICPA)

몽골공인회계사협회(MICPA)가 1999년 3월9일 설립되었다. 몽골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한 세계와 세정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럼으로써 몽골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윤리강령의 준수
- ② 회계감사기준 제정
- ③ 전문직 능력개발
- ④ 회계감사 품질관리
- ⑤ 연구, 학술활동
- ⑥ 정부위탁업무수행

제 III 장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제 1 절 한국회계기준의 역사

한국의 회계기준의 역사는 1958년 6월 “기업회계원칙”을 효시로 출발하였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 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이어 1974년 대통령령으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1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전문 9장 133조로 구성되어 1997년까지 9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8년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주체가 금융감독원으로 바뀌고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이 제정되었고 12월에는 국제적 기준과 합치할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0년대 후반 회계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표준화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1958년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 제정위원회에서, 1976년 이후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증권감독원의 감리국이, 1990년 이후에는 회계관리국이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제정과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1981년 기업회계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997년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로 개칭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1998년 9월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9년 1월 한국회계연구원이 개원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이 요구될 때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회계기준서의 제정과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인의 상임위원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심의·의결기구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의 미비점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9월 1일에 발족된 이후 회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두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 1기 회계기준 연구원 (1999.9~2002.08)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 자산”과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을 제정하였다.

제 2기 회계기준 연구원 (2002.09~2005.08)

학계 4인, 공인회계사업계 2인과 기업계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11호 “중단사업”부터 기업회계기준서 22호 “주당이익”까지와 기업회계기준서 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제정하였으며,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하고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를 발표하였다.⁷⁾

제 2 절 한국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감독기관

1. 제정기관

한국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이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7) 김대호, 2007.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p.14.

고 있다.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상임위원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주요 임무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독립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 연구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자본시장 감독기관

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01.02에 설립되었다. 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협력 및 교류, 조사연구 및 통계편제 등이다.

3.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Korea Accounting Association, KAA)는 1973년에 한국 회계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상임이사 30명, 이내이사 60명, 이내감사 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 ②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 ④ 회계학 연구 자료의 교환 및 보급
-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가 처음으로 1945년 10월에 조선계리사회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그 동안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한 세계와 세정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신화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공인회계사 수는 12,200명쯤이다⁸⁾. KICPA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윤리강령 준수
- ② 회계감사기준 제정
- ③ 전문직능력 개발
- ④ 회계감사품질 관리
- ⑤ 연구, 학술활동, 출판
- ⑥ 정부위탁업무 수행
- ⑦ 국제활동 및 교류
- ⑧ EBRL(Exchang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개발, 보급, 확산사업 등이다.

8) <http://www.kicpa.or.kr/index.html>

제 IV 장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제 1 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1.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국제회계는 기업의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회계상의 문제들, 예를 들면 환율과 환산, 회계정보의 공시, 인플레이션회계, 국제회계기준,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국제감사기준, 국제조세문제 등의 국제적 차이에서 볼 수 있는 회계상의 방법이나 그 절차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한다. 즉, 회계상의 개념이나 실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취급하며 국가간 회계제도의 상이성을 연구하는 분야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이하 IASC)는 2001년 조직을 새롭게 개혁하여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개칭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와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익적인 관점에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ASB는 기준의 제정과정에서 세계 각국과의 공동작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성원도 세계 각 지역과 회계 관련 업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안분하고 있다. IASCF를 운영하는 IASCF Trustee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4석이 할당되었고 중국과 일본이 2석씩 차지하고 있다. IFRIC의 12명 위원은 회계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IASB 위원 중 한명이 맡고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IFRS도입이 확산되기 전까지 미국 GAAP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본시장을 토대로 영향력을 있는 회계기준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기업의 여러 가지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예외규정과 지나친 규칙중심기준(Rule-Based Standard)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FASB)는 IASB와의 논의를 통하여 IFRS와 미국 GAAP의 지속적인 통합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GAAP과의 정합노력은 IFRS를 더욱 발전된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Principle-Based Standard)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여 해석에 대한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또한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판단과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회계처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기반으로 수립된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통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2. 국제회계기준의 발달과정

오늘날의 각국의 회계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및 기타 환경의 모든 조건에 의해서 현저한 영향을 받으며 점차적으로 국제 지향적 성격을 가지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복식부기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영국은 17-18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함으로써 회계를 세계로 전파시켰다. 영국은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회계의 감사기술을 전파시켰다. 그 후 덴마크는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로 회계를 전파시켰으며, 프랑스는 폴리네시아와 프랑스 통치하의 국가들에게 전파시켰다. 또한 독일도 일본, 스웨덴, 러시아에 회계를 전파시켰다. 금세기에 들어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식의 회계체계와 회계시스템이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까지 전파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회계는 가히 국가간의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

현재의 국제회계의 출현의 계기는 대공황 이후 주식시장이 붕괴했던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분식회계의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회계 담당자들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준거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고 회계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준수되는 것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197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C)는 재무보고의 개선과 통일을 위해 구성된 이후 2001년 국제

9) 송자 외2인. 1994. 국제회계. 법경 출판사. p.32.

회계기준위원회 (IASB)로 변경된 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재무제표의 작송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기준 및 절차의 개선과 회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걸쳐 전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이 2005년도에 EU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제회계기준/국제재무보고기준(IAS/IFRS)의 인정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환경의 차이와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 통일(표준화)된 회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G.Mueller 교수는 국제 재무보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를 들고 있다.¹⁰⁾¹¹⁾

- 1) 국제기업의 활동규모 증대로 인하여 해외에 지점·자회사 등의 형태로 수익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얻고 있는 국제기업이 많아졌고, 이러한 기업에서 해외사업을 관리하고, 장래의 회계방침을 책정하기 위한 회계보고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 2) 국제기업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증권투자의 증가도 회계보고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해외증권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재무보고에는 언어·회계개념과 실무의 차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 3) 국제적 상호의존체제의 발전도 국제회계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ECSS(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등의 지역조약기구의 운영에는 회계정보가 불가결한 수단인데, 이러한 요청이 국제회계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 4) 각국의 공공정책의 증가도 국제회계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미국의 예를

10) G.G. Mueller. 1967. *International Accounting*. New York, Macmillan Company. p.121.

11) 김경수. 2001. *국제회계*. 판교 TNS. p.47.

들면, 국제수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평형세와 세금대피회사를 억제하기 위한 세법규정이라는 공공정책은 국제적인 재무회계와 자료없이는 효과적 운영을 할 수 없다.

국제회계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 자국의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교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¹²⁾ 조세당국도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수익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수익 등을 용이하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 표준화는 회계정보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며 정보의 경제성 및 유용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외부이용자 및 규제기관은 아래와 같은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¹³⁾

- 1)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2)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는 국제상장의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각 국가의 증권규제기관들은 상장 및 보고관련 회계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상장과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동시에 촉진할 것이며 회계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 3) 국제회계법인과 조세당국은 회계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를 통하여 감사 및 조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 자사를 갖고 있는 국제회계법인은 표준화로 감사비용을 절감하고 감사인들의 교류를 증대할 수 있다.

제 2 절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는 1973년 런던에서 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 창립되었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연합,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포함되어 13개국의 이사회국이 조직되었고, 1975년에는 국제

12) 신병오. 1997. 국제회계기준의 발전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p.3.

13) 박범호, 오준환. 1998. 국제회계. 무역경영사. p.45.

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제 1호 “회계방침의 공시”가 공표되었다. 1983년 IASC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ing Committee)과 협약을 맺었으며, 이 협약에 따라 국제회계사연맹의 구성원은 IASC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¹⁴⁾ 최근에는 글로벌회계기준의 제정기구로서 IASC는 그 이름을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로 개칭하고 2001년 4월 1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전 세계의 회계전문가 집단과 재무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들이 각국의 회계기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국제적 조직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현장에 제시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무제표의 표시가 준수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공표하고, 기준의 세계적인 수용 및 준수를 촉진한다.
- 2)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규정·회계기준 및 절차의 향상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특히 파생상품을 포함한 복잡하고 새로운 거래유형들이 나타나므로 국제적인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크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수탁위원회,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기준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는 국제회계기준과 공개초안, 국제회계기준 해석을 승인한다. IASB는 수탁위원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최소한 5명은 회계감사분야, 3명은 재무제표작성자, 3명은 재무제표이용자, 1명은 학계를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IASB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회계기준(IAS)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공개초안(ED)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2)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

14) 변중석. 1998. *국제회계와 신용평가의 실무*. 조세통람사. p.37.

15) 송우영. 2003. *국제회계*. 대경. p.60.

견구립을 위한 원칙서의 초안이나, 다른 토론서를 공표한다.

- 3) IASB의 기술적인 의제선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실행한다.
- 4)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준자문위원회로부터 조언을 제공받는다.
- 5) 모든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공개초안과 국제회계기준, 국제재무보고기준, 원칙서의 초안 및 해석은 IASB에 의해서 영어로 발표된다.

2. 수탁위원회 (The Board of Trust)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FAC이 추천하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5명과 국제적인 회계조직에서 추천하는 재무제표작성자, 이용자, 학계를 대표하는 3명, 공개적인 신청과정을 통해서 선출한 1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수탁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IASB의 전략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IASB의 연간예산을 승인하며 자금 조달을 결정한다.
- 2) 회계기준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이슈를 검토하고 IASB의 업무를 촉진시키고 국제회계기준의 강력한 적용을 촉진한다.
- 3) IASB와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IFRIC), 기준자문위원회 (SAC)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수정한다.
- 4) SAC의 심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의 공표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개정안을 승인한다.

3.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IFRIC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수탁위원회에서 선출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회계기준과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대해서 해석하고 IAS와 IFRS에서 특

- 별히 언급되지 않은 재무보고문제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 2) 각 국의 회계기준과 IAS, IFRS가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도록 각 국의 기준설정단체들과 접촉한다.
 - 3) IASB의 승인을 얻어서 공개토론을 위한 해석서의 초안을 공시하고 최종 해석서를 완성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토론서를 공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4) IASB에 보고하고 최종해석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다.

4. 기준자문위원회 (SAC : Standard Advisory Council)

SAC위원은 수탁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SAC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IASB에게 의제선정과 우선순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 2) 중요한 회계기준제정프로젝트에 대한 SAC의 의견을 IASB에게 제공한다.
- 3) IASB와 수탁위원회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조언을 제공한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원기구로 국제회계사연맹이 있다. 197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977년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탄생되었다. 국제회계사연맹은 회계전문인들의 국제적 협력과 회계 시스템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민간 회계전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성된 국제회계사연맹의 등장으로 인해 체계적인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사연맹의 역할에서의 중복과 혼동이 발생됨에 따라 1982년 양 기구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국제회계 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및 공표에 대한 권한 기구로, 국제회계사연맹은 감사, 재무관리, 윤리, 교육 등의 회계 관련 기준의 제정과 공표의 권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국제회계사연맹의 목적은 통일된 회계기준의 바탕에서 국제회계사 업무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V 장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비교

제 1 절 대차대조표 비교

대차대조표란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산)과 기업에 대한 채권자 및 소유자의 청구권(지분)을 대조 표시한 보고서다. 기본적으로 몽골과 한국 회계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각 나라의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특징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다. 아래 표에 비교하듯이 기초적인 작성 방법이나 형식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다음 <표 5-1>은 몽골과 한국의 대차대조표 양식을 비교한 것이다.

<표 5-1> 대차대조표의 비교 16)

몽골				한국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20..년 ...월 ...일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회사명)			
단위:투그릭				단위: 원			
연번	과목	잔액		과목	제...(당)기	제...(전)기	
		전기	당기		금액	금액	금액
A	B	1	2	자산			
1	자산			I.유동자산			
1.1	유동 자산			(1)당좌재산			
1.1.1	현금및현금등가물			1. 현금및현금등가물			
1.1.2	단기투자자산			2. 단기금융상품			
1.1.3	자산평가충당금			3. 단기매매증권			
1.1.4	매출채권			4. 매도가능증권			
1.1.5	대손충당금			5. 만기보유증권			

16) 몽골 재무부. 2006. 회계 및 재무제표 관련 규정. 언거트. 울란바타르. p.137.

1.1.6	기타미수수익			6.매출채권				
1.1.7	채고 및 요소자산			대손충당금				
1.1.8	가축			7.단기대여금				
1.1.9	선급금과선급비용			대손충당금				
1.1.10	_____			8. _____				
1.1.20	유동자산 총계			(2)재고자산				
1.2	비유동성자산			1.상품				
1.2.1	고정자산			2.제품				
1.2.2	감가상각누계액			3.반제품				
1.2.3	기타고정자산			4.재공품				
1.2.4	감가상각누계액			5.원재료				
1.2.5	미완성공사			6.저장품				
1.2.6	가축(농업부문)			7. _____				
1.2.7	무형자산			II.비유동자산				
1.2.8	감가상각누계액			(1) 투자자산				
1.2.9	장기투자외기타자산			1.장기금융상품				
1.2.10	대손충당금			2.매도가능증권				
1.2.11	_____			3.만기보유증권				
1.2.20	비유동성자산 총계			4.지분법적용투자 주식				
1.3	자산 총계			5.장기대여금				
2	부채 및 자본			대손충당금				
2.1	부채			6.장기성매출증권				
2.1.1	단기 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2.1.1.1	미지급금			대손충당금				
2.1.1.2	임금미지급금			7.투자부동산				
2.1.1.3	법인세미지급금			8.보증금				
2.1.1.4	개인소득세미지급금			9. _____				
2.1.1.5	부가가치세미지급금			(2) 유형자산				
2.1.1.6	기타세금미지급금			1.토지				
2.1.1.7	건강및사회보험미 지급금			2.건물				
2.1.1.8	배당금미지급금			감가상각누계액				
2.1.1.9	단기은행차입금			3.구축물				
2.1.1.10	기타미지급금			감가상각누계액				
2.1.1.11	선수금			4.기계장치				
2.1.1.20	단기부채 총계			감가상각누계액				

2.1.2	장기부채			5.선박				
2.1.2.1	장기수표미지급금			감가상각누계액				
2.1.2.2	장기은행차입금			6.차량운반구				
2.1.2.3	장기회사채미지급금			감가상각누계액				
2.1.2.4	기타장기미지급금			7.건설중인자산				
2.1.2.5	장기미지급금충당금			8. _____				
2.1.2.6	_____			(3)무형자산				
2.1.2.20	장기부채 총계			1.영업권				
2.2.20	부채 총계			2.산업재산권				
2.3	자본금			3.광업권				
2.3.1	소유주식 a) 국가			4.어업권				
2.3.2	b) 개인			5.개발비				
2.3.3	자기주식			6. _____				
2.3.4	보통주 자본금			자산 총계				
2.3.5	자본 잉여금			부채				
2.3.6	기업합리화적립금			I.유동부채				
2.3.7	기타잉여금			1.매입채무				
2.3.8	당기순이익(손실)			2.단기차입금				
2.3.8.1	당기순이익(손실)			3.미지급법인세				
2.3.8.2	전기순이익(손실)			4.유동성장기부채				
2.3.20	자본금 총계			5.x x 충당금				
2.4	소액주주의 주식			6. _____				
2.5.20	부채와자본금총계			II.비유동부채				
	이하 여백			1.사채				
				사채발행차금				
				2.장기차입금				
				3.장기성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4.x x 충당금				
				5. _____				
				부채 총계				
				자본				
				I.자본금				
				1.보통주자본금				
				2.우선주자본금				
				II.자본잉여금				
				1.주식발행초과금				
				2.감자차익				
				3.기타자본잉여금				
				III.자본조정				
				1.주식할인발행차금				
				2.배당건설이자				

	3.자기주식				
	4.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또는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해외사업환산대차(또는해외사업환산차)				
	6. _____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해외사업환산손익				
	3.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4. _____				
	V.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1.이익준비금				
	2.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				

1.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자산

자산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금이나 현금이 될 수 있는 권리나 현금이 될 수 있는 재화 및 타인자본인 부채가 포함된 기업의 자원이다. 몽골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몽골과 한국의 자산의 분류를 다음 <표 5-2>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표 5-2> 자산분류 비교표

자 산			
몽골		한국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단기투자자산, 자산평가충당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타미수수익, 가축, 선급금과선급비용, 재고 및 요소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 비용, 기타 당좌자산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재고자산
고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기타고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미완성공사, 가축(농업부문), 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장기투자및기타자산, 대손충당금	비유동성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입어권), 차지권(지상권), 창업비, 개발비(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보증금, 장기선급비용 등

1.1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이나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 한다. 한국은 유동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몽골은 기업체의 자산 중에 1년 이내로 현금이나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을 통틀어서 유동자산이라 기재하고 있다. 한국은 유동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으나 몽골에서는 이를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다.

1.2 재고 자산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판매과정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 한다. 상품매매업에서는 상품, 적송품(위탁판매를 위해 타점에 발송한 상품), 미착품(이미 매입이 끝나 운송도중에 있는 것) 등으로 분류되고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반제품, 저장품, 소모품 등으로 분류된다. 재고자산은 몽골의 회계기준서 (IAS 2) 제2호,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제10호로 되어 있는 항목이다. 몽골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측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서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 구성된다.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 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제조간접비의 배부액을 포함한다.

다음은 몽골회계기준이나 한국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제10호에서는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몽골의 회계기준서 제2호에서는 가중표준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 몽골회계기준이나 한국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이렇게 비교해본 결과 위에서 살펴본 사항 이외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본다.

1.3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나 기계, 설비, 건물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은 한

국의 경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이러한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서 비유동자산이라 하고 있다. 상기 비교에서 보면 몽골의 자산 항목의 특징에는 가축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것이다. 즉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에도 가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몽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몽골의 특성상 가축을 꼭 기재하는 것이 아직도 목축업이 주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1.3.1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구체적인 재화를 말한다. 토지, 건물, 구조물, 선박, 차량·운반구, 기계장치·공구, 기구·비품, 건설가계정 등을 가리킨다. 몽골회계기준과 한국기업회계기준서의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 1) 몽골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항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기업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유형자산의 항목을 자세히 구분하였다.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 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 2) 몽골회계기준은 유형자산매입시 발생할 수 있는 국·공채 매입부대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기업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몽골회계기준에서는 개별 자산의 독립적 현금흐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개별자산이 속하는 자산그룹(현금창출단위)의 순실현가능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역으로 개별자산의 손실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경

우 현금창출 단위의 자산가치는 각 단위의 영업권가액을 포함하여 현금 창출단위의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영업권에서 차감한다.

- 4) 몽골회계기준에서는 증여·현물출자,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한국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정가액으로 규정한다.
- 5) 몽골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형태나, 내용연수의 변동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회계기준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6) 몽골의 토지는 다음 3 종류로 분류된다. (1) 개인 소유의 토지 : 완전 사유화된 토지로서 현재 올란바타르 외곽 지역으로 몽골 국민에게 1가구당 700평방미터씩 무료로 불하하고 있다. 개인 소유이기에 매매, 저당, 담보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토지 임차권 : 토지 소유자는 국가이며, 몽골 국민이나 몽골 법인은 최장 100년 까지 임대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과 외국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차권자는 매분기 국가에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의 허락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담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허락에 따라 타인 명의로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3) 토지 사용권 : 토지 소유자는 국가이며 몽골 국민, 몽골법인, 외국인, 외국법인은 최초 2년부터 시작하여 최장 100년까지 장기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자는 제3자에게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임대가 불가능하다. 다음 <표 5-3>은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을 비교한 것이다.

<표 5-3> 몽골과 한국의 부동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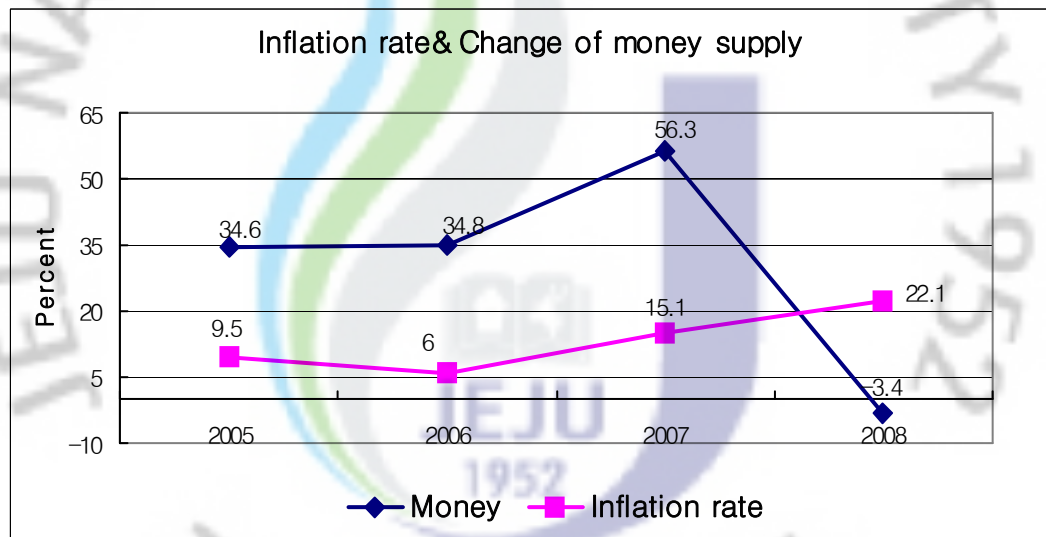
구분	몽골	한국
소유주체	국가, 공공기관, 개인, 법인체	국가, 공공기관, 개인, 법인체
소유형태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토지)	소유권
매매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토지)	소유권 전매
소유 기간	토지 사용권 및 임차권 취득 시 : 계약에 따라 15~60년 (1회 최대 연장기간 40년)	무한정
권리	소유권 : 상속, 매매, 임대, 담보 등 모든 법률 행위의 자유 임차권 : 임차허가 기관의 허가에 따라 양도, 저당 및 제3자에게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부여 가능 사용권 : 모든 법률 행위 불가	상속, 매매, 임대, 담보 등의 모든 법률 행위의 자유
세율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된 금액의 0.6%	토지 기본 세율 : 0.002% 건물 기본 세율 : 0.003%
임대 기간	양측 계약에 따름	주택 : 기본 2년 건물 : 기본 5년
주택 임대 계약 해지	양측 계약 사항에 따름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 보증금	양측 계약 사항에 따름	증액 청구 1/20 금액 초과 불가
외국인 건물 소유 여부	소유권 인정	소유권 인정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 행사 여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상속, 임대차, 전대, 담보 등 법적인 모든 권리의 행사 가능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상속, 임대차, 전대, 담보 등 법적인 모든 권리의 행사 가능
분쟁 중재 기관	건물 및 주택 : 법원 토지 : 국가 토지 부서	법원
주택임대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	국가 공증 기관의 확인	등기, 주민등록 이전, 확정 신고 등

몽골에서 토지는 현재까지 국가공공재산이다. 토지평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국가공공재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몽골에서 토지사유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하나가 될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토지 평가는 앞으로 회계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3.2 유형자산의 평가와 물가상승률

<그림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2006년에는 6%였으나 2008년 22.1%로 나타났다.

<그림 5-1> 몽골의 물가상승률 추이



Source: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Bank of Mongolia

물가상승이 두드러질 때, 그 원인이 화폐가치의 하락에 기인할 경우 대응해야 할 회계처리·보고 방식.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각종 자산의 취득원가와 결산시의 시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기업회계는 취득원가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기말자산의 평가액·상각액도 취득액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말시가가 원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오르면 취득원가주의는

- 1)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너무 작아지며 따라서 교체자금의 유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 3) 재고조사자산에 있어서도 매상원가산입액이 너무 작아져서 매상총이익 속에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가공이익이 혼입되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일정의 공준에 근거한 취득원가주의에서 이탈한 시가주의에 가까운 회계를 채용해야 한다. 고려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가수준수정회계(일반물가지수 등을 써서 취득원가를 수정하는 방법), 교체원가회계(기말시가에 의해서 수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안정가치회계라고 한다. 또 일반적인 회계실무의 범위 안에서도 고정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감가상각에 대한 가속도상각이나 상각연한단축을 행하거나 재고조사자산평가에 후입선출법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도 연구되고 있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회계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3.3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자산, 즉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률상의 권리나 사실상의 경제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지상권), 창업비, 개발비 등이 속한다. 몽골의 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영업권(Goodwill) - 매입원가는 그의 시가를 초과 차액을 한다.
- 2) 특허권 - 특허법에 의하여 지정 상품을 인정하여 주어진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 3) 저작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에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 4) 창립비용 - 회사설립 및 영업활동 개선과 관련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 5) 상표권 - 상품명, 상표 및 기타 특별히 등가물들을 발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 6) 기타 - 상기 이외에 무형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시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한국의 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 3) 광업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 4) 어업권 (임어권을 포함한다)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 5) 차지권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 6) 창업비 -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 7)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8) 기타의 무형자산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상기 내용에서 보면 몽골의 회계기준 같은 경우는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을 개별 항목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한국기업회계기준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란 항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을 삭제하듯이 몽골도 광업권과 어업권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것도 몽골의 경우에는 자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여기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어업권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목축업이 발달됐지만 대륙국가다 보니 어업이 없다고 볼 있다. 그래서 따로 어업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부채

일반적으로 부채란 타인에게 빚을 진 것으로 장래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 즉 채무를 말한다. 회계에서는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부채는 갚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부채(단기부채)와 비유동부채(장기부채)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단기부채)는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이며, 비유동부채(장기)는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를 말한다. 여기서 1년이란 당해 부채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부채를 갚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음 <표 5-4>는 몽골과 한국회계기준서의 부채의 분류를 비교한 것이다.

<표 5-4> 부채의 분류 비교

몽골		한국	
미지급금, 임금미지급금, 법인세미지급금, 개인소득세미지급금, 부가가치세미지급금, 기타세금미지급금, 건강 및 사회보험미지급금, 배당금미지급금, 단기은행차입금, 기타미지급금, 선수금급	단기부채	부채	유동부채
장기수표미지급금, 장기은행차입금, 장기회사채미지급금, 기타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충당금	장기부채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2.1 단기 부채 (유동부채)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채를 단기 부채라 한다.

- 1) 기업,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상환 대기 중인 부채
- 2) 대차대조표 작성 일부터 12달 이내로 갚아야 할 부채이다.

단기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기재한다.

- 1) 미지급금 -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을 말한다.
- 2) 단기수표미지급금 - 일정한 대금을 지정한 날짜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기록을 어음부채라 한다.
- 3) 임금미지급금 - 직원들한테 지급할 임금 및 기타 형태로 지급될 급여를 말한다.
- 4) 법인세미지급금 - 기업이, 법인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과 기말에 미지급된 법인소득세를 여기 기재한다. 분기 말이나 연말에 미지급된 세액은 감사기관에서 인정한 세액과 같아야 한다.
- 5) 개인소득세미지급금 - 봉급에서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기말에 미지급한 잔액을 여기 기재한다.
- 6) 건강및사회보험미지급금 - 봉급에서 공제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및 고용주가 지급할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이 기말에 남아있을 때 여기 기재한다.
- 7) 배당금미지급금 -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지급되기로 공시한 배당금을 여기 기재한다. 단, 현금형태로 지급될 배당금의 기말 잔액을 단기 미지급배당금이라 여긴다.
- 8) 단기은행차입금 - 단기간 및 1년 이내로 갚기로 한 대출을 단기부채라 여긴다.
- 9) 이연법인세 - 1997년 재무부 장관이 통과시킨 제 429호 “재무제표 및 세금 보고서의 상호 관계 조정”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서 이연 하기로 판단한 세액을 말한다.
- 10) 기타 부채 - 초과 매출과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한 부채 및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한 부채, 비용에 포함됐지만 미지급 부채, 당기 장기부채 일부, 당기에 지급됐지만 결과는 후기에 기재될 부채를 여기에 기재한다.
- 11) 선수급금 -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구매자나 주문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부채로 여겨 여기에 기재한다. 제품 및 용역을 제공 후에는 부채를 마감하고 수익에 계산한다.

당기에 단기부채와 관련 평가충당금을 단기차입금충당금이란 라인에 (-)로 표시한

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유동부채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일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 4)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 5)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제 예수액으로 한다.
- 6)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7)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 8) 미지급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 등으로 한다.
- 9)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 10) 선수수익 -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 11)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12) 기타 유동부채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몽골회계기준과 한국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표기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좀 다를 뿐이다. 몽골회계기준서의 미지급금과 단기수표미지급금을 한국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매입채무로 묶어서 표기했는데 한국기업회계기준서의 선수금 및 선수수익을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선수금으로 묶었다. 이러한 표기방법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부채 (비유동부채)란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상환기일(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장기부채 (비유동부채)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데 자기자본과 함께 장기적인 고정자금의 원천을 표시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장기부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장기수표미지급금 - 1년 후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 2) 장기은행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1년 후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 3) 장기회사채미지급금 - 1년 후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 4) 기타장기미지급금 - 상기 이외 1년 후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장기미지급금 중 당기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단기미지급금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적절한 결정에 의하여 계산된 장기부채총당금을 장기미지급금총당금이란 라인에 (-)로 표시하여 순장기부채 총계를 표기한다. 한국기업회계기준서에서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사채 -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2)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3) 장기성매입채무 -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 4) 장기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5) 이연법인세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6) 기타 비유동부채 - 상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장기(비유동)부채의 표기방법이나 내용은 몽골회계기준서나 한국기업회계기준서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대차대조표의 구체적인 비교 : 자본

자본이란 기업의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 다음 <표 5-5>에서 몽골과 한국기업회계기준의 자본을 비교해 봤다.

<표 5-5> 자본 비교

몽골	한국	
소유주식 a) 국가 b) 개인, 자기주식, 보통주 자본금, 자본 잉여금, 기업합리화적립금, 기타잉여금, 당기순이익(손실), 전기순이익(손실)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해외사업환산대 (해외사업환산차)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 잉여금 (결손금)	이익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처리전결손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몽골회계기준서에서 자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본이란 투자자본과 취득자본을 합친 것이다. 투자자본이란 주주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에 투자한 총금액이다. 취득자본이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총수익이다.

- 1) 자본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 및 투자한 자본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에서 국가자본 및 개인자본이라 분류한다.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수, 주당 액면가, 총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한다.
- 2) 자본 잉여금 - 회사의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그러나 주식 액면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을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은 역조정 계정이 된다.
- 3) 자기주식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되돌려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자기주식이라 한다. 자기주식을 원가보다 낮거나 높은 발행가액으로 재발행할 경우 손익 계산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가액 및 원가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차변 아니면 대변에 기입한다.
- 4) 기업합리화적립금 - 자본을 재평가한 결과로 인한 가격인상을 말한다.
- 5) 기타 잉여금 - 정부에 지급할 것 및 다양한 기부 등을 여기다 기재한다.
- 6) 당기순이익 - 대차대조표에서는 당기 및 전기로 구분하고 표기한다.

한국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1) 자본금 -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2) 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다.

(2)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 (결손금) - 잉여금(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이익잉여금(결손금)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이익준비금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정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4) 자본조정 -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건설이자 -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3)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상 비교해본 결과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자본금을 통틀어서 보고 있지만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보통주자본 및 우선주자본으로 구분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손실을 당기순이익 및 순손실을 주기하는 반면에 몽골회계기준서에서는 당기 및 전기를 기재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에서의 자본 항목은 한국은 몽골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2 절 손익계산서 비교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 연도 중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한 비용을 기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순이익을 표시하는 계산서를 손익계산서라 한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와 함께 경영활동에 의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두 계산에 의한 순손익액은 동액이어야 한다.

다음 <표 5-6>은 몽골과 한국의 손익계산서 양식이다.

<표 5-6> 손익계산서 양식 비교

몽골			한국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20..년..월..일 (회사명) (단위 : 투그릭)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 원				
연번	과목	당기 합계	과목	제..(당)기 금액	제..(전)기 금액		
1.1	기본영업소득		I.매출액				
1.1.1	매출액		II.매출원가				
1.1.2	매출 환급과 누설		1.기초상품 (또는 제품) 재고원가				
1.1.3	매출할인		2.단기제품제조원가(또 는당기상품순매입원자)				
1.1.20	총매출액		3.판매가능제품(또는상 품)원가				
1.2	매출원가		4.기말제품 (또는 상품) 재고원가				
1.3	매출총이익(손실)		III.매출총이익 (또는 매출총손실)				
1.4	영업(판매비와일반관리비) 비용		IV.판매비와관리비				
1.4.1	기본급과수당		1.급여				
1.4.2	사회보험료		2.퇴직급여				
1.4.3	수선료		3.복리후생비				
1.4.4	수도광열비		4.임차료				
1.4.5	임차료		5.접대비				
1.4.6	출장비		6.감가상각비				
1.4.7	운송비		7.무형자산상각비				
1.4.8	소모품비		8.세금과공과				
1.4.9	감가상각비		9.광고선전비				
1.4.10	광고선전비		10.연구비				
1.4.11	통신우편비		11.경상개발비				
1.4.12	연료 가솔린비		12.대손상각비				
1.4.13	대손상각비		13.				
1.4.14	상여금		V.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1.4.15	지급이자		VI.영업외수익과차익				
1.4.16	기타원가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1.4.20	영업원가총액					3.임대료				
1.5	기본영업수익(손실)					4. 단기투자자산처분차익				
2	영업외수익(비용)					5. 단기투자자산평가차익				
2.1	제조와용역외수익(비용)					6.외환차익				
2.2	손해배상수익(손실)					7.외화환산이익				
2.3	배당소득					8.지분법이익				
2.4	외환차수익(손실)					9.투자자산처분이익				
2.5	외환환산수익(손실)					10.유형자산처분이익				
2.6	주식과채권발행수수료					11.사채상환이익				
2.7	지분법이익					12.법인세환급액				
2.8	기타					13.전기오류수정이익				
2.20	영업외수익(비용) 총계					14.				
3	세전 소득(손실)					VII.영업외비용과 차손				
3.1	법인소득세비용					1.이자비용				
4	세후소득(손실)					2.기타의대손상각비				
4.1	소액주주에대한배당					3.단기투자자산처분차손				
5	경상이익(손실)					4.단기투자자산평가차손				
5.1	특별순이익(손실)					5.재고자산감모손실				
6	당기순이익(손실)					6.외환차손				
6.1	단위주식당이익					7.외환환산차손				
	이하 여백					8.기부금				
						9.지분법차손				
						10.투자자산처분차손				
						11.유형자산처분차손				
						12.사채상환차손				
						13.법인세추납액				
						14.전기오류수정손실				
						15.				
						VIII.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IX.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X.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XI.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 xxx원)				
						XII.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XIII.주당손익				
						1.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2.기본주당순손익				
						3.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4.희석주당순손익				

몽골과 한국의 손익계산서를 보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다.

<표 5-7>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비교

몽골		한국	
매출액, 매출 환급과 누설, 매출할인, 총매출액	기본영업소득	영업수익	매출액, 용역매출, 위탁매출(인도기준: 수탁자판매일), 사용매출(인도기준: 매입의사 표시일), 장기 할부매출 등
매출원가		수익	영업외수익
기본급과수당, 사회보험료, 수선료, 수도광열비, 임차료, 출장비, 운송비, 소모품비, 감가상각, 광고비, 통신우편비, 연료 가솔린비, 대손상각비, 상여금, 지급이자, 기타원가	영업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차익, 단기투자자산평가차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소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액, 전기오류수정이익
제조와용역외수익(비용), 손해배상수익(손실), 배당소득외환차수익(손실), 외화환산수익(손실), 주식과채권발행수수료, 지분법이익, 기타	영업외수익(비용)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비)
		영업외비용	기초상품재고원가, 단기제품제조원가, 판매가능제품, 기말제품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연구비, 수선비, 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보관비, 견본비, 포장비, 기술개척비(경장벽인 것), 경장연구개발비, 잡비 등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것),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말함

몽골의 회계기준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항들을 손익계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① 수익
- ② 영업성과
- ③ 영업비용
- ④ 계열사 및 합작회사의 손익
- ⑤ 법인세 비용
- ⑥ 정상영업 손익
- ⑦ 특별 손익
- ⑧ 소수주주 참여
- ⑨ 당기 순손익

한국회계기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익과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익

일반적으로 수익이란 기업의 생산물로서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실물자산을 말한다. 또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고객에게 인도한 재화 또는 제공한 용역의 화폐액을 말한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현금을 투자하여 생산과정을 통하여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수익은 반드시 현금의 유입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도 현금입금이 안 되나 수익은 발생한 것이다. 수익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1) 비용대응성, 반드시 수익을 얻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 2) 수입동반성, 수익은 수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손익거래성, 수익은 기업의 일상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해야 한다.
- 4) 회수익의 분류

수익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된다. 영업수익(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에서 생기는 수익(예, 재화의 매출, 용역의 수익)을 말한다. 따라서 매출액은 그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되어 수익으로 나타난다. 영업외 수익,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는 즉 영업활동의 결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임대료 등으로서 중단 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익의 인식,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는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된다.

- 1)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할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기업 실체가 보

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2)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 기업실체의 수익 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익은 수익에 내포되어 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할 때 이익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익은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비용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 판매와 용역의 제공 등 중요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요인을 말한다. 수익획득 과정에서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의미하며 동시에 비용의 발생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 즉 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매출원가, 당기에 매출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된 원가를 말한다. 판매업일 때는 판매를 위해 구입되는 재화의 취득가액과 또는 제조회사의 경우는 제조를 통하여 재화가 판매된 경우 그 재화의 매출원가 등이다. 판매비와 관리비, 기업의 주된 영업에서 생기는 비용을 말하는데 당기에 매출을 얻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비된 원가이다. 판매 및 관리직원의 급여, 여비교통비 등이 있다. 영업외 비용, 영업활동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기업의 중요한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다. 영업외 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이 있다. 비용의 인식,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고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 1)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 2)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

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들 수 있다.

- 3)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들 수 있다.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한다. 비용과 지출 또는 손실의 개념은 유사하게 보이나 본질을 구분되어 있다. 손실은 비용에 내포되어 있다. 비용에서 수익을 뺄 수 있다면 손실이므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출은 반드시 현금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비용은 현금 지출 없이도 발생하게 된다.

제 3 절 현금흐름표 비교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말 현재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중의 거래별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회계기말 현재의 기업의 자금동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다음 <표 5-8>은 몽골과 한국의 현금흐름표 양식이다.

<표 5-8> 현금흐름표 양식 비교

몽골			한국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_____ 20..년..월..일 (회사명) (단위 : 투그릭)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 원			
연번	과목	당기 합계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1	기본영업현금흐름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	기본영업현금수입		(1).당기순이익(손실)			
1.1.1	매출현금수입		(2).현금의 유출이 없 는 비용 등의 가산			
1.1.2	비영업현금수입		1.감가상각비			
1.1.3	보험보상현금수입		2.퇴직급여			
1.1.4	_____		3. _____			
1.2	기본영업현금지출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1.2.1	인건비현금지출		1.사채상환이익			
1.2.2	사회보험현금지출		2. _____			
1.2.3	소모품비현금지출		(4).영업활동으로 인 한 자산,부채의 변동			
1.2.4	수도광열비현금지출		1.재고자산의감소 (증가)			
1.2.5	연료, 운송, 수선비현 금지출		2.매출채권의감소 (증가)			
1.2.6	기타구매비용 현금지 출		3.매입채무의증가 (감소)			
1.2.7	이자현금지출		4.미지급법인세의증 가(감소)			
1.2.8	법인세현금지출		5. _____			
1.2.9	보험료현금지출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0	_____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0	영업의현금흐름순계		1.단기금융상품의처분			

			2.유가증권의처분				
2	투자현금흐름		3.토지의처분				
2.1	고정자산처분수입		4. _____				
2.2	고정자산구매지출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3	투자자산처분수입		1.현금의단기대여				
2.4	투자자산구매지출		2.단기금융상품의취득				
2.5	이자와배당		3.유가증권의취득				
2.20	투자의현금흐름순계		4.토지의취득				
3	재무현금흐름		5.개발비의지급				
3.1	주식발행		6. _____				
3.2	은행차입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	금융비용지출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	대출상환		1.단기차입금의차입				
3.5	국가의재정지원과기금조달		2.사채의발행				
3.6	모든형태의기부		3.보통주의발행				
3.7	당기장기부채상환		4. _____				
3.8	현금에 의한 자기주식 구매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	현금 배당		1.단기차입금의상환				
3.10	이자와장려금		2.사채의상환				
3.11	환율변동에 의한 수익(손실)		3.유상감자				
3.20	재무현금흐름순계		4. _____				
4	순현금흐름의 총계		IV.현금의증가(감소)(I+II+III)				
5.1	초기현금과현금증가품의잔액		V.기초의현금				
5.2	말기현금과현금증가품의잔액		VI.기말의현금				

다음은 몽골의 현금흐름에 대한 규정이다.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항으로 구성된다.

- (1) 기본영업현금흐름
- (2) 투자현금흐름
- (3) 재무현금흐름
- (4) 순현금흐름의 총계

기초 현금에서 기말 현금을 빼고 나타나는 현금 변동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총계와 같아야 한다. 기본영업현금흐름 -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본적으로 현금수익, 현금지출로 구분하며 직접법으로 표시한다.

직접법으로 표시한 현금수익, 현금지출에 관한 정보를

- (1) 기업의 재무제표,
- (2) 매출, 매출원가 등 손익계산서에 기재한 기타 항목들,
- (3) 당기 재고자산, 영업활동 차입금, 부채 등의 변동,
- (4) 기타 현금 아닌 자산,
- (5) 투자 및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기타 항목에서 볼 수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표시할 때에는 현금수익을 수익별로, 현금지출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투자현금흐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미래에 취득할 수익이나 현금자산 증가를 목적으로 추가자산, 준비자산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현금을 나타낸다. 투자 현금흐름은 장기 사용할 자산 및 현금 등가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투자취득이나 매출을 포함한다.

재무현금흐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래에 청구할 상환액을 미리 계산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순현금흐름의 총계 - 외화로 이루어진 현금흐름을 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통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당일 환율에 의하여 기재한다.

한국의 현금흐름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을 정의함에 있

어서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 구매, 판매활동뿐만 아니라, 주된 수익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제반활동 중에서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외의 거래를 모두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 비용 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 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와 감소를 말한다.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매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

품,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재무활동이하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 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다음 <표 5-9>는 현금흐름을 보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다.

<표 5-9> 현금흐름표 계정과목 비교

몽골			한국	
매출현금수입, 비영업현금수입, 보험보상현금수입	현금수익	기본영업 현금흐름 1952	현금유입	매출 등 수익활동,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
인건비현금지출, 사회보험현금지출, 소모품비현금지출, 수도광열비현금지출, 연료, 운송, 수선비현금지출, 기타구매비용현금지출, 이자현금지출, 법인세현금지출, 보험료현금지출	현금지출		현금유출	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이자비용, 미지급 법인세의 지급 등
			자산, 부채의 변동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등
고정자산처분수입, 고정자산구매지출, 투자자산처분수입, 투자자산구매지출, 이자와배당		투자 현금흐름	현금유입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유가증권의 처분, 토지의 처분 등
			현금유출	현금의 단기대여,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토지의 취득, 개발비 등
주식발행, 은행차입, 금융비용지출, 대출상환, 국가의재정지원과기금조달, 모든형태의기부, 당기장기부채상		재무 현금흐름	현금유입	단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보통주의 발행 등
			현금유출	단기차입금의 상환,

환, 현금에 의한 자기주식 구매, 현금 배당, 이자와장려금, 환율변동에 의한수익(손실)			사채의 상환, 유상감자 등
--	--	--	----------------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몽골과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몽골 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회계활동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몽골과 한국의 현금흐름은 똑같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고 있고 한국은 각각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몽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만 수익과 지출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수익과 지출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몽골의 이자수익은 재무활동에 속하고 있는데 한국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는 몽골은 은행대출 및 외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금흐름표에서 은행대출 및 외화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상으로 몽골과 한국의 현금흐름표를 비교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표기방법이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4 절 자본변동표의 비교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몽골의 자본변동표에 관한 규정

다음 <표 5-10>은 몽골의 자본변동표 양식이다.

<표 5-10> 몽골의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20..년..월..일
(회사명)							(단위 : 투그릭)
연번	과목	주식 자본	자본잉여 금	재평가 유보금	외환유보 금	누적소 득	총액
1	20..년..월..일						
2	회계변경						
3	변경 잔액						
4	고정자산 재평가 증감액						
5	투자자산재평가증감액						
6	외환유보금						
7	손익계산서미기재손익						
8	당기순이익						
9	배당						
10	발행주식자산						
11	20..년..월..일						
12	회계변경						
13	변경잔액						
14	고정자산재평가증감액						
15	투자자산재평가증감액						
16	외환유보금						
17	손익계산서미기재손익						
18	당기순이익						
19	배당						
20	발행주식자산						
21	20..년..월..일						

자본변동표에는 기업의 자본금, 재평가, 외화 환산 및 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변동을 2기로 표시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 오류 수정을 첫이익잉여금을 수정하며 표시한다. 자본, 투자의 재평가 증가/감소 및 외국 회사의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발생한 외화 환율 차액을 자본 변동이라 여겨 기재한다. 자기자본, 추가자본 및 기타 준비금 변동을 당기 기초, 기말로 표시한다. 지분, 배당금 등 주주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변동 이외의 모든 변동은 당기 총손익을 나타낸다. 재평가 준비금을 증가 및 감소된 변동의 총계로 표시한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에 증가한 변동을 가산하고, 감소된 변동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한국의 자본변동표 양식

다음 <표 5-11>은 한국의 자본변동표 양식이다.

<표 5-11> 한국의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원						
구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xx.x.x(보고금액)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수정후이월이익잉여금						
연차배당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처분후이월이익잉여금						
중간배당						
유상증자(감자)						
당기순이익(손실)						
자기주식취득						
해외사업환산손익						
20xx.x.x						
20xx.x.x(보고금액)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수정후이월이익잉여금						
연차배당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처분후이월이익잉여금						
중간배당						
유상증자(감자)						
당기순이익(손실)						
자기주식취득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0xx.x.x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자본금의 변동은 유·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무상증자(감자), 결손금 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 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조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 ② 배당건설이자
- ③ 자기주식
- ④ 주식매수선택권
- ⑤ 출자전환채무
- ⑥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 ⑦ 감자차손
- ⑧ 자기주식처분차손
- ⑨ 상기 이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 ② 해외사업환산차손익
-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차손익
- ④ 상기 이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 ②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 ③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 ④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 ⑤ 당기순손익

⑥ 상기 이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의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 후 이월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



제 VI 장 결론

현재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를 인정하면서 각 나라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세계화됨에 따라 회계정보 교환 등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있다. 몽골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지 어느덧 18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몽골도 해외투자 유치 등 세계 시장에 발맞추어 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몽골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고 1991년부터 한국과의 외교교류가 시작됨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투자환경 여건이 마련되었다.

요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몽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 및 경제활동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몽골 산업연수생들이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몽골 업체들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의 기업들이 몽골과 한국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 줄 수 있다.

각 나라의 회계기준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나라의 법률, 사회 및 경제 환경 특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활동 범위가 넓을수록 회계학도 따라서 발달된다. 본 연구로 몽골과 한국의 재무제표의 분류, 내용 및 특징들을 주로 관찰하고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를 한 결과 몽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특징 때문에 다른 부분도 관찰됐다. 몽골의 경우 아직도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나 농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 및 자산 분류 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몽골과 한국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회계기준의 장점들을 몽골회계기준에 도입할 방안을 파악하고 검토한다.

본인의 이 연구는 몽골과 한국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다.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자료 수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많은 연구가 나오면 양국 기업 간의 불이해 및 불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이해하고 비교를 통하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외감법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나 몽골은 회계법에 의해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원가, 저가주의, 시가기준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몽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가, 저가주의나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몽골은 토지 사유화를 허락하고 있다. 다만 몽골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몽골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 소유 토지이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은 토지를 단기 및 장기로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은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몽골에서 토지사유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토지 평가는 앞으로 회계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넷째, 몽골은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에서 발생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의 인식에는 현금주의도 채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를 오랫동안 고집해왔으므로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발전정도와 상품시장경제의 발달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금융상품 자본조달 등 여러 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의 발전도 한국과는 일정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시장화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회계기준은 시장경제의 산물로서 시장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 따라 회계기준도 변화하므로 시장화의 정도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경제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다. 회계정보는 특정 관리상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므로 정보의 질적 속성, 형식, 내용 등은 관리수준을 고려해야한다.

여덟째 몽골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두드러져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너무 작아지며 따라서 교체자금의 유보가 불가

능하게 되고, 재고자산에 있어서도 매출원가산입액이 너무 작아져서 매상총이익 속에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가공이익이 혼입되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일정의 공준에 근거한 취득원가주의에서 이탈한 시가주의에 가까운 회계를 채용해야 한다. 고려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가수준수정회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에 의존하여 몽골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주로 연구자의 관점만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실무적으로 몽골과의 무역 및 대몽골 투자에서 몽골의 회계시스템 및 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 및 재무 보고의 기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 회계기준을 비교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많은 연구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김경수. 2001. *국제회계*. 관교 TNS.
- 김경호. 2006. *국제 공공 회계기준의 동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 김기평, 김승용, 김안규. 2007. *재무회계원리*. 박영사.
- 김대호. 2007.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석용, 이재성, 이경구, 최헌섭. 2006. *회계학원론*. 산문출판.
- 나마. 2005. 몽골 회계기준 특징 및 역사. 학술회 자료. 울란바타르.
- 담바더르즈. 2004. 세계화 및 신경제 시대 회계 및 회계감사. 학술회 자료.
- 담바더르즈. 2006. *회계학이론*. 어유니홀레그.
- 룬덴. 2006. *재무회계*. 송강. 울란바타르.
- 몽골 재무부. 2006. *회계 및 재무제표 관련 규정*. 언거트. 울란바타르.
- 몽골 재무부. 2007. *국제회계기준 이용 설명*. 언거트. 울란바타르.
- 박범호, 오준환. 1998. *국제회계*. 무역경영사.
- 변중석. 1998. *국제회계와 신용평가의 실무*. 조세통람사.
- 송우영. 2003. *국제회계*. 세학사.
- 송자 외2인. 1994. *국제회계*. 법경 출판사.
- 신병오. 1997. 국제회계기준의 발전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어르길.베. 2004. 몽골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체렌나드미드. 2004. 몽골 회계학에 대한 연구 및 전망. 석사학위논문. 몽골국립대학교.
- 최홍식. 2006. *재무제표가 한눈에 보이는 회계원리*. 삼일인포마인.
- 푸렙토야. 2006.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그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몽골국립대학교.

2. 국외 문헌

- Dondog.L. 2004.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mplementation in Mongolia*. Journal of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 Enkh-Amgalan.L. 1997.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Nature of Accounting System in Mongolia*. Otaru, Hokkaido, Japan.
- Lunden.S. 2007. *Introduction to Accounting*. Mongoli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 Mongolian Statistical. 1990-2009.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 Mueller.G.G. 1967. *International Accounting*. NewYork, Macmillan Company.
- Robert. N. Anthony. 1999. *Essentials of Accounting*. Addison Wesley.
담바더르즈 번역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 Sainjargal.B. 2005. *Chairman of Accounting Department*.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3. Web Site

- Accounting and Auditing in Mongolia(<http://www.google.com>)
-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http://www.google.com>)
- Accounting and Auditing Training)(<http://www.google.com>)
- Financial management and governance issues in Mongolia(<http://google.com>)
- Government budgeting and accounting(<http://www.google.com>)
- 몽골공인회계사협회(<http://www.monicpa.mn>)
- 몽골국세청(<http://www.mta.mn>)
- 몽골재무부(<http://www.mof.pmis.gov.mn/e-balance>)
- 몽골 종합 검색 사이트(<http://www.tsahim.net>)
-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
- 한국회계기준위원회(<http://www.kasb.or.kr>)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Mongolian Accounting Standard and Korea Accounting Standard

Tseveen Battungalag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s global business landscape has grown and changed rapidly,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etting along with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long with the globalization trend of the world economy, the business trading between Mongolia and Korea have accelerated and will be expended rapidly. Current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ompany performance because financial information originates in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Many of these companies effectively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using different accounting rules and regulations, thus creating different values or measures for the same economic ev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rs oriented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overcome these problems in two countries with more transparent and reliable inform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ccounting systems of both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aspect as follows:

First, the processes of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in both countries were reviewed. Problems that had been exposed in such processes were pinpointed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accounting systems.

Second, the present status and major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principles and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were described. Those country's accounting principle was compared and analyzed each other.

Third, differences in the accounting system, class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major terminology as well as in the perception of fundamental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detail as an attempt to determine the gap of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between both countries.

Howev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economic exchanges are rapidly activ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hat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make joint studies and efforts to establish a joint reference system in response of demanding in both countries to use a common accounting information in practice.

【부록1】 몽골 재무제표 양식

Bkyuklsy vgyhoounay mgalgyunay bgzum

1. Dglgyv			
(GGYDYTJ)		20 kys f;fj	
		(Mfufuffj)	
Bfjnay ;euggj	Dglgyvsvy poal	Ol;tu;tl	
		j vgjsy	j vgjsy
A	B	1	2
1	Hfjfyuf		
1.1	Tjutlmnay hfjfyuf		
1.1.1	Bfyuf dg mooymta g;nlmugh hfjfyuf		
1.1.2	Dkunik heugwggm hfjfyuf kjeelglm		
1.1.3	Oytluttyna hgvgu;eelug		
1.1.4	:gyvys g.lgug		
1.1.5	Ygai.gjuoa g.lgusy hgvgu;eelug		
1.1.6	Devg; g.lgug		
1.1.7	Dgigg bgm-jngl		
1.1.8	Bgl gb,mg;		
1.1.9	Ej;xnlr mflvfy pgj;gl mkkwkk		
1.1.10			
1.1.20	Tjutlmnay hfjfyunay ;oy		
1.2	Tjutlmnay dev hfjfyuf		
1.2.1	Oy;vty hfjfyuf		
1.2.2	Hejnbmlgu;vgy tltu;tl		
1.2.3	Devg; oy;vty hfjfyuf		
1.2.4	Hejnbmlgu;vgy tltu;tl		
1.2.5	:eevguoa dginlug		
1.2.6	Bgl gb,mg;		
1.2.7	Dn-m dev hfjfyuf		
1.2.8	Hejnbmlgu;vgy tltu;tl		
1.2.9	Hfjfyuf kjeelglm dg devg; hfjfyuf		
1.2.10	Oytluttyna hgvgu;eelug		
1.2.11			
1.2.20	Tjutlmnay dev hfjfyunay ;oy		
1.3	Ynam hfjfyunay ;oy		
2	Fj mflfdj dg tptbinuxnay fbx		
2.1	Fj mflfdj		
2.1.1	Dkunik heugwggm fj mflfdj		
2.1.1.1	:gyvys fulfu		
2.1.1.2	Wglnyunay fulfu		
2.1.1.3	Kjlkusy mgm.gjsy fulfu		
2.1.1.4	HGKGM sy fulfu		

2.1.1.5	YFGM sy fulfu		
2.1.1.6	Dev; mgm.gisy fulfu		
2.1.1.7	TBY: sy inbmutlnay fulfu		
2.1.1.8	Yku;kl giunay fulfu		
2.1.1.9	Dgy[ys dkunyk heugwggm pttl		
2.1.1.10	Dev; fulfuf		
2.1.1.11	Ej;:xnlr kjvky kjlkuk		
2.1.1.20	Dkunyk heugwggm fj mflfdjnay ;oy		
2.1.2	Ejm heugwggm fj mflfdj		
2.1.2.1	Ejm heugwggm .-[v-lnay fulfu		
2.1.2.2	Ejm heugwggm pttl		
2.1.2.3	Ejm heugwggm dky;sy fulfu		
2.1.2.4	Dev; ejm heugwggm fulfu		
2.1.2.5	Ejm heugwggm fulfunay hgvgu:eelug		
2.1.2.6			
2.1.2.20	Ejm heugwggm fj mflfdj		
2.2.20	Fj mflfdjnay ynam ;oy		
2.3	Tptbinuxnay fbx		
2.3.1	Fbx g) mfjnay		
2.3.2	d) he.nay		
2.3.3	Hglggvys he.,wgg		
2.3.4	He.,wggm [g'nmglsy ;oy		
2.3.5	Ytbr mlfu;vfy [g'nmg		
2.3.6	:ghny oytluttyna yffw		
2.3.7	Tptbinuxn:nay fbxnay dev; htvtu		
2.3.8	Hejnbmlgu;vgy ginu gl;gu;gl		
2.3.8.1	Mgalgyunay o-nay		
2.3.8.2	Fbyfh o-nay		
2.3.20	Tptbinuxn:nay fbxnay ;oy		
2.4	Ooyttv wfyhnay he., kjklwkk		
2.5.20	Fjmflfdj dg Tptbinuxn:nay fbxnay ;oy		

2.Kjlkusy mgalg		
(GGYDYTJ)		20 kys vgjsy f:fj (mfufju)
::	Opooltln	Mgalgym heugwgg
1.1	Oy;vty oal grnlluggys kjlkuk	
1.1.1	Dkjeelglmsy kjlkuk	
1.1.2	Dkjeelglmsy hkjku;kl dg dewggm	
1.1.3	Dkjeelglmsy hfyuflfm	
1.1.20	Dkjeelglmsy kjlkusy ;oy	
1.2	Dkjeelvg y domttu;thooyna fjmfu	
1.3	Ynam ginu gl;gu;gl	
1.4	Oal grnllugg(dkjeelglm -jfyhna e;nj;lgusy pgj;gl)	
1.4.1	Oy;vty dklky ytbu;tl wglny	

1.4.2	Ynaubnay ;ggmuglsy inbmutl	
1.4.3	Pgv.gj oalxnluttyna pgj:gl	
1.4.4	Ginulglmsy pgj:gl	
1.4.5	Mojttvnay pgj:gl	
1.4.6	Gldgy mkbnklmsy pgj:gl	
1.4.7	Mtt.jnay pgj:gl	
1.4.8	Moohna t; bgm-jnglsy pgj:gl	
1.4.9	Tltu;tlnay pgj:gl	
1.4.10	Pgj vejmglnluggys pgj:gl	
1.4.11	Iee;gy hkldkkys pgj:gl	
1.4.12	Igmgeheys pgj:gl	
1.4.13	Yga.gjuoa g.lgusy pgj:gl	
1.4.14	Iguyl ejgbieellsy pgj:gl	
1.4.15	Pttlney hoounay pgj:gl	
1.4.16	Devgi; pgj:gl	
1.4.20	Oal grnlluggys pgj:lsy ;oy	
1.5	Oy;vty oal grnlluggys ginu gl:gu:gl	
2	Oy;vty dev oal grnlluggys ginu gl:gu:gl	
2.1	Oy;vty dev oal;tj oalxnluttyna ginu gl:gu:gl	
2.2	Mkjueel, hfyuflflmnay ginu gl:gu:gl	
2.3	Yku:kl giunay kjlkuk	
2.4	>gl/msy hgyinay ffjxlflmnay htjturvty ginu gl:gu:gl	
2.5	>gl/msy hgyinay ffjxlflmnay htjturtuoa ginu gl:gu:gl	
2.6	He.,wgg dky:sy pgj:lsy hkjku:eelug	
2.7	Hgjjgm dklky hgbmgjvgy oal;tjttv klvky ginu	
2.8	Devgi;	
2.20	Oy;vty dev oal grnlluggys ginu gl:gu:glsy ;oy	
3	Mgm.gj mflfnay fbyfh ginu gl:gu:gl	
3.1	Kjlkusy mgm.gj sy pgj:gl	
4	Mgm.gj sy ;jggghn ginu gl:gu:gl	
4.1	Wffyh; ykku:kh he.,	
5	_j;nay grnlluggys ginu gl:gu:gl	
5.1	Kywuka inyrmta poalv	
6	Mgalgym o-nay wt.tj ginu gl:gu:gl	
6.1	Ytur he.,wgy; ykku:kh ginu gl:gu:gl	

3. Bfyufy uoaluttyna mgalgy

20..kys vgj f;fj
(mfufju)

Bfjnay :euggj	Opooltm	Mgalgym heugwggys :oyuttj
1	Oy;vty oal grnlluggys bfyufy uoalutt	
1.1	Oy;vty oal grnlluggys bfyufy kjlkuk	
1.1.1	Dkjeelglmsy dklky he;gl;gy g.guxn:nay kjlkuk	
1.1.2	Mevlgh oal grnlluggyggyv kjvky kjlkuk	
1.1.3	:ggmuglsy yfh.fjffv holtty g.vgy bfyuf	
1.1.4		
1.2	Oy;vty oal grnlluggys bfyufy pgilgug	
1.2.1	Grnlx;g; klukvky bfyuf	
1.2.2	Ynaubnay :ggmuglsy dgaueellgug; mflvfy bfyuf	
1.2.3	Moohna t; bgm-jngl he;gl;gy g.ghg; mflvfy bfyuf	
1.2.4	Ginulglmsy pgj;gl; mflvfy bfyuf	
1.2.5	Moli igmgheey mtt.jnay hflv vtldtu htjtuvtl; mflvfy bfyuf	
1.2.6	Dtlmuty ynalootux;t; mflvfy devg; bfyuf	
1.2.7	Mflvfy hoo	
1.2.8	Mflvfy kjlkusy mgm.gj	
1.2.9	:ggmuglsy mflfdjm mflvfy bfyuf	
1.2.10		
1.20	Oy;vty oal grnlluggys wt.tj bfyufy uoaluttyna :oy	
2	Hfjfyuf kjeelglmsy oal grnlluggys bfyufy uoalutt	
2.1	He;gl;vgy ejm heugwggm hfjfyunay kjlkuk	
2.2	He;gl;gr g.vgy ejm heugwggm hfjfyuf	
2.3	He;gl;vgy hfjfyuf kjeelglmsy kjlkuk	
2.4	He;gl;gr g.vgy hfjfyuf kjeelglm	
2.5	Holtty g.vgy hoo ykku;kl ginu	
2.20	Hfjfyuf kjeelglmsy oal grnlluggys wt.tj bfyufy uoaluttyna :oy	
3	Vgyhoonay oal grnlluggys bfyufy uoalutt	
3.1	Ugjugvgy he.,wgg	
3.2	Dgy[yggv g.vgy ptl	
3.3	Vgyhoonay mojttnay fulfunay mflfdj	
3.4	Pttlney mflflm	
3.5	Elvggv fuvfy vgyhoornm	
3.6	Mfjfl dojnay hgy;n.	
3.7	Ejm heugwggm fjnay mgalgyunay heugwggys mflflm	
3.8	Bfyuffj tjuoolr he;gl;gr g.vgy he.,wgg	
3.9	Bfyuffj mflvfy ykku;kl ginu	
3.10	Hoo dg ejgbieellsy kjlkuk	
3.11	>gl/msy hgyinay pfjoo	
3.20	Vgyhoonay oal grnlluggys wt.tj bfyufy uoaluttyna :oy	
4	Doh wt.tj bfyufy uoalutt	

5.1	Bfyuf mooymta g:nlmugh hfjfyunay thyna ol;tu;tl	
5.2	Bfyuf mooymta g:nlmugh hfjfyunay twvnay ol;tu;tl	

4.Fbxnay ffjxlflmnay mgalgy							
							20..kys vgj f:fj
(GGYDY)							
(mfufju)							
::	Opooltm	He.,wggm [g'nmg]	Y t b r mflfu;vfy [g'nmg]	:ghny oytlutty na yffw	U>gl/msy hfj.ooltl mnay yffw	Hejnbml gu;vgy ginu	Y n a m :oy
1	kys j vgjsy yna ol;tu;tl						
2	Dojmutlnay dk;lkusy ffjxlflm						
3	Pgljeelvg y ol;tu;tl						
4	Oy;vty Hfjfyunay :ghny oytluttyna fvflm deejglm						
5	Hfjfyuf Kjeelglmsy :ghny Oytluttyna fvflm deejglm						
6	Ug;gg; >gl/msy hfj.ooltlmnay yffw						
7	Kjlkusy Mgalgy holtty pf.iffjffuoa klp ugip						
8	Mgalgym o-nay wt.tj ginu						
9	Ykku;kl ginu						
10	Ugjugvgy he.,wggm [g'nmg]						
11	20 ky vgj f:fj						
12	Dojmutlnay dk;lkusy ffjxlflm						
13	Pgljeelvg y ol;tu;tl						
14	Oy;vty Hfjfyunay :ghny oytluttyna fvflm deejglm						
15	Hfjfyuf Kjeelglmsy :ghny Oytluttyna fvflm deejglm						
16	Ug;gg; >gl/msy hfj.ooltlmnay yffw						
17	Kjlkusy Mgalgy holtty pf.iffjffuoa klp ugip						
18	Mgalgym o-nay wt.tj ginu						
19	Ykku;kl ginu						
20	Ugjugvgy he.,wggm [g'nmg]						
21	20 kys vgj f:fj						

【부록2】 몽골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몽골회계기준	YDD KEVMGY:GJM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표시	Vgyhoounay mgalgyunay mklneelug
IAS 2 Inventories	재고자산	Dgigg bgm-jngl
IAS 7 Cash Flow Statements	현금흐름표	Bfyufy uoaluttyna mgalgy
IAS 8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당기순이익, 오류수정, 회계변경	YDD dk;lkuk, Dojmutlnay mkkwkkllsy ffjxflm dklky gl;gg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사건	Dglgyvsy f;jnay ;giggghn oal z.;gl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건설공사계약	Dginlusy utjtt
IAS 12 Income Taxes	법인세	Kjlkusy gldgy mgm.gj
IAS 14 Segment Reporting	부문별보고	V-ub-ymnay mgalguygl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Oy;vty hfjfyuf
IAS 17 Leases	리스	Mojttv
IAS 18 Revenue	수익	Kjlkuk
IAS 19 Employee Benefits	종업원 혜택	Grnllgux;sy mtmut.tj mtmutbr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정부보조금과 정부보조의 명세에 대한 회계	Pgvunay ugpjisy dewglmuoa mevlgbrnay YDD dg Pgvunay ugpjisy mevlglwggys mk;jeelug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외화환산	Ug;gg; .gl/msy hgyiys

Rates		oj yflff
IAS 23 Borrowing Costs	금융비용	Pttlnay pgj;gl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특수관계자공시	Hkldkkmka mglsy mk;jeelug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퇴직보상계획의 회계와 보고	Mtmnt.jnay mflf.lfuffyna YDD dg mgalguygl
IAS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Ytumutvty dg mev;gg vgyhoounay mgalg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Hgiggm [kb'gyn ;gh, hfjfyuf kjeelgm
IAS 30 (2007년부터 IFRS 7로 대체 적용됨)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업 재무 제표와 자산기관들의 정보공개	Dgy[dg mooymta g;nlmugh vgyhoounay dgaueellgusy vgyhoounay mgalgyunay mk;jeelug
IAS 31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합작지분회계	Hgbmgjvgy oal;tjnay he., kjklwkku vgyhoounay mgalg; mevugh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금융상품 재무제표표시	Vgyhoounay htjtuloj: Mklnleelug
IAS 33 Earnings per Share	주당이익	Ytur heugwggy; ykku;kh ginu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중간재무보고	Pg.vgj o-nay vgyhoounay mgalg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자산의 손상	Hfjfyunay oyt wtynay deejgm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충당금 우발부채 우발자산	Yffw dklpkiua fj mflfdj dg dklpkiua hfjfyuf

IAS 38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	Dn-m dev hfjfyuf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금융상품 인식라 측정	Vgyhoounay htjtulooj: Holtty pf.iffjflm dg htbrnlm
IAS 40 Investment Property	투자부동산	Hfjfyuf kjeelglmsy pkjnelglmmga ol hf:lfh hfjfyuf
IAS 41 Agriculture	농업	Hf:ff gr ghea
IFRS 2 Share-based Payment	주식기준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기업 결합	Dnpy-vnay ytu:tl
IFRS 4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조건	:ggmuglsy utjtt